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나281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나2815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1가단1270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이상원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박규현, 신성우, 이은경

변론종결 2024. 4. 30.

판결선고 2024. 6. 25.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1가단1270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23. 접수 제49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를 상대로 상속등기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갑 제1~5호증“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 12행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및 이 법원의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5, 16행의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법원의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의 ”갑 제7, 21, 22,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를 ”갑 제7, 21, 22,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 9행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I의 필적감정결과, 이 법원의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감정인 I의 필적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5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4행의 ”M아파트“를 ”J아파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6행의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를 ”제외되어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1행의 ”갑 제8, 30호증, 을 제3, 4호증“을 ”갑 제8, 3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행의 ”다)“를 ”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행의 ”라)“를 ”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5행의 ”C은“ 다음에 ”1989. 5.경 원고에게“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6, 12, 13행의 각 ”R“을 각 ”D“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9행 내지 제11쪽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서 추가한다.

『다. 유류분의 계산

1) 원고는, C이 1989. 5. 16. 원고의 배우자인 L에게 J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L은 1994. 6. 20.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10,000,000원을 지급받고 J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바, 원고의 특별수익액은 381,372,719원[≒ 위 J아파트의 매매대금 210,000,000원 × (상속개시시인 2021년 GDP 디플레이터 108.417 ÷ L이 제3자에게 J아파트를 처분한 1994년 GDP 디플레이터 59.699)]이고, 이에 따른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357,720,460원[≒ {(이 사건 아파트 상속개시 당시 시가 2,575,000,000원 + 원고의 특별수익액 381,372,719원) × 원고의 유류분 비율인 1/4} - 원고의 특별수익액 381,372,719원 - 순상속분액 0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상속 개시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57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이 1994. 5. 19. 제3자에게 J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 L이 그 당시 제3자에게 J아파트를 2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8행의 ”을 제7, 8, 16, 17, 20호증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15~20, 28호증만으로는“을 ”을 제7, 8, 16,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15 내지 20,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21.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8027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상속등기에 소요되는 법무사 비용 및 관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6,000여만 원에 이르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바, 피고는 법률상 권원 없이 동액 상당의 비용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등기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비용 지출로 인하여 피고가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거나,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말소등기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소영, 판사 전승환, 판사 김경애

【별지】**목 록****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S

서울특별시 송파구 T

U아파트 V동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W

전유부분의 표시

건물의 번호 : X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99.385㎡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S 대 118649.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50160.6분의 79.998

2. 서울특별시 송파구 T 대 31511.1㎡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50160.6분의 79.998. 끝.

